

대통령령 제 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
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차. 치킨류(즉석섭취식품, 즉석조리식품, 식육함유가공품, 양념육 및
분쇄가공육제품 중 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)
- 라. 치킨(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)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